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2009년 6월 pp.27~74
한국세무학회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조용언** · 이정란***

<요 약>

본 연구는 K-IFRS의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재무제표 구성요소별로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회계실무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연법인세의 정보유용성, 이익의 질과의 관련성,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 공정가치 측정 문제 등 이연법인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K-IFRS의 도입이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모두 비유동자산·부채로 표시되고 probable의 확률적 의미를 ‘높은’으로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평가에 공정가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방법과 금액, 그리고 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무비율의 해석, 자산규모와 기업가치를 측정하고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상품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에게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가모형을 채택한 기업과 재평가모형을 채택한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 사이에서도 공정가치의 측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왜곡시켜 자본시장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K-IFRS는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손상의 징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현재 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손상차손검사의 범위 확대에 의한 이연법인세정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손상차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K-IFRS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의영업권 개념을 삭제하였다. 또한 이전에 인식하였던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이익 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K-IFRS도입 전후로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을 비교·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08년 삼일회계법인의 한국세무학회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yecho@dau.ac.kr, 051-200-7482, 제1저자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jrlee@ysu.ac.kr, 055-380-9472, 교신저자

이상과 같은 내용과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연구주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K-IFRS를 채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과 변동성 증가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공정가치의 측정,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회계감사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연법인세를 통한 이익조정이 더욱 증대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연법인세를 통한 이익조정에 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이연법인세,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치, 기업가치, 이익조정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3월 30일 제7차로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1998년 4월 1일부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지급세액방식을 버리고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 회계제도와 국제회계기준의 추세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이 혼재하는 해석 [45-52]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가 도입되었으며, 2004년 4월 16일에는 자산·부채법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가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희망기업부터 선택적으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²⁾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 및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13년까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에 2-Tier System을 도입하여 상장회사는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회사는 K-IFRS와는 별도의 비상장회사 기준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경호 등(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하게 되면 재무제표 구성요소 또는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는 현행 세법규정과 불일치를 초래하여 새로운 법인세효과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법인세효과 중 법인세기간배분문제, 즉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1) 현행 기준서 제12호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금융기관은 선택적 적용에서 배제되며, 보험업의 적용시기는 IFRS 개정추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도 원하면 K-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제가 기업의 재무보고와 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기업의 시장가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것은 회계정보를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정보의 유통과 조세제도를 관할하는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도 K-IFRS의 채택으로 나타날 영향에 대한 정보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본다. 이미 IFRS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Susana Callao et. al. 2007)

이영한(2007)은 K-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주요 영향 중의 하나로 K-IFRS의 공정가치 평가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미실현 보유손익 인식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괴리를 확대시키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이연법인세문제는 크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probable의 의미를 ‘매우 높은’ 또는 ‘거의 확실’에서 ‘높은’으로 해석함에 따른 자산·부채의 인식기준 변화이다. 이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확대,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완화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을 변동시키는데 이것이 이익조정이나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가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Fair Value Option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자산에 대해 자산손상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 사이에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과 자산손상을 인식하는 기업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와 손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중한 정보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측정의 신뢰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금액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의 측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셋째, 무형자산이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식별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인식될 무형자산의 수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법은 무형자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연법인세문제이다. 이와 함께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상각을 금지하고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넷째, 이 이외에도 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 등으로 부채의 인식금액이 증가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이연법인세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는 기업의 새로운 이익조정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K-IFRS 도입으로 인해 이연법인세 인식금액과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과 실현가능성 등을 이용한 재량권을 남용할 기회를 더욱 많이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기업가치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문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K-IFRS의 도입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무적 관점에서 이연법인세와 관련한 현행 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기업들이 K-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하는지를 제안한다. 둘째,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본다.

II.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 상이한 회계정책을 담고 있다. K-IFRS의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하나의 원인은 이연법인세회계를 규정하고 있는 K-IFRS 제1012호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원인은 K-IFRS 체제 내의 여러 회계기준서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구성요소들에 대한 회계정책과 세법 규정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범위와 크기가 현행 기준서와 세법 규정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것과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K-IFRS 제1012호(법인세)와 이연법인세

K-IFRS 제1012호가 채택됨으로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비해 이연법인세회계의 기본적인 틀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기준 변경으로 인해 인식금액이 증대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의 자산가치와 시장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 발생가능성 판단기준의 변경

(1)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인 완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달려있다. K-IFRS가 도입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서 ‘높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표 1〉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의 완화

K-IFRS 제1012호	기준서 제16호
• 문단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u>높은</u> 경우	• 문단 20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u>거의 확실</u>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05).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차이와 영향 분석. 내용 수정.

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Remote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능성이 ‘높은’ Probable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 50% 초과)에 해당하며, 가능성이 ‘매우 높은’ Highly probable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중요하게 높은(예 : 80% 이상) 경우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2008, 99). 현행 기준서는 Probable을 80%이상의 가능성으로 표현해 왔다.³⁾

K-IFRS는 가능성에 대한 IFRS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이 거의 확실(80%)에서 높은(50%)으로 완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K-IFRS 제1012호의 채택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기업의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 기업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K-IFRS 도입하는 첫 해에는 유동비율, 자산규모, 기업가치를 측정하여 평가할 때 연도별, 기업별 비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인식조건 변경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이하 ‘종속기업 등’)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조건도 K-IFRS 제1012호의 채택으로 현행 기준서 제16호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종속기업 등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 현행 기준서 제16호(문단 36)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인 반면, K

3)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probable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수익인식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였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문단 12, 20, 28)에서는 수익인식기준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표현하면서 probable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probable)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K-IFRS 제1018호에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서와 같이 probable을 ‘가능성이 높은’으로 표현하여 제1039호 문단78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과 구분하고 있다.

- IFRS 제1012호(문단 39)에서는 ‘높은’ 경우로 완화하였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서 제16호(문단 40)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인 반면, K-IFRS 제1012호(문단 44)에서는 ‘높은’ 경우로 완화하여 표현함과 아울러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반적 인식조건인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 24)를 추가하고 있다.

〈표 2〉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인식조건 변경

구분	K-IFRS 제1012호	기준서 제16호
이연법인세 부채 미인식 조건	문단 39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u>높다</u>.	문단 36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u>거의 확실</u>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조건	문단 44 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u>높다</u>. 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u>높다</u>.	문단 40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u>거의 확실</u>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06). 앞의 책 내용 수정.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조건 변경을 비교형식으로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여부

0%		50%		80%	100%
소멸가능성			높다		거의 확실
기준서 제16호	부채	미인식	인식		
	자산	미인식			인식
K-IFRS 제1012호	부채	미인식	인식		
	자산	미인식	인식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06). 앞의 책.

이와 같은 종속기업 등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인식 조건의 변경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기업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조건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과정의 복잡성 완화, 업무상 착오 감소, 회계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기준은 강화되어 K-IFRS 채택으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은 완화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에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 이외에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식조건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계에서 유의하여 대처해야 할 점은 전술한 이연법인세 인식조건이 완화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나. 적용세율의 변경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하는 것은 적용할 세율의 구조와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과 같이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에 적용할 세율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기준서 제16호(문단 43)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한계세율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은 한계세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부록(A15)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K-IFRS 제1012호(문단 49)는 <표 4>에서와 같이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소멸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적용세율의 변경

K-IFRS 제1012호	기준서 제16호
문단 49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u>평균세율</u>을 사용하여 측정	부록 A15 문단 43에 구체적 규정 없이 A15에서 <u>한계세율</u> 적용하도록 명시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07). 앞의 책 내용 수정.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일정수준 이상(또는 이하) 일 것만 예상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총액을 예상하여 따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세율에 비해 실무적용상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표준의 총액에 대한 예측정확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신뢰성 있는 평균세율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평균세율이 단순평균세율인지 가중평

균세율인지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가중평균세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중평균세율의 예측은 회계실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세율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첫째, 세율과 과세소득의 변화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앞으로의 예상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사정에 적합한 과세소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평균세율을 예측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보다 앞서 IFRS를 도입한 유럽의 사례를 탐구하여 평균세율의 적용방식을 차용하거나 회계실무자들의 편의와 회계정보의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2단계 세율을 단순평균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공시방법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대차대조표에 공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의 구분 표시, 자산·부채의 상계 표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비유동 구분표시 문제이다. <표 5>에 요약되어 있듯이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문단 56)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에 모두 비유동자산·부채로 표시된다. 이것은 현행 기준서 제16호(문단 60)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일시적 차이나 세무상결손금 등의 예상소멸시기, 즉 유동성에 따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따르는 경우에 비해 유동자산·부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유동비율, 순운전자본비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K-IFRS를 도입하는 직전 회계연도와 첫 회계연도의 재무비율 변동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5>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공시방법

구분	K-IFRS 제1001호, 1012호	기준서 제16호
유동·비유동 항목구분	• K-IFRS 제1001호(문단 56)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	• 문단 60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
자산·부채의 상계여부	• K-IFRS 제1012호(문단 74)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상계 표시 (1)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집행권을 가지는 경우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를 열거)	• 문단 61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 표시

다음으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상계 표시여부이다. <표 5>에 요약되어 있듯이 K-IFRS 제1012호(문단 74)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와 마찬가지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 (1)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K-IFRS에서는 현행 기준서 16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과세당국이라는 조건이외에 과세대상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집행권을 가져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법적 집행권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이다(문단 72). 현행 법인세법(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총당·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개별 기업은 법인세에 관해서 법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지배기업이 법인세에 관해서 법적 집행권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문단 74의 (2)에서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와 함께 과세대상기업이 다를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K-IFRS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 주식공시사항

K-IFRS를 도입하게 되면 <표 6>과 같이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주식공시 사항이 많이 추가되므로 실무계에서 이전보다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주식공시사항 차이

K-IFRS 제1012호	기준서 제16호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문단 81(3)) • 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 변경(문단 81(4)) • 배당 지급과 관련한 법인세 결과(문단 81(9), 82A, 87A, 87B, 87C) • 이연법인세자산의 활용여부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문단 82) •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88)	규정 없음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10). 앞의 책.

2. 유형자산과 이연법인세

K-IFRS의 채택으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재평가모형의 선택적 적용, 차입원가, 자산손상의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⁴⁾

가. 재평가모형의 선택적 적용

K-IFRS 제1016호(문단 29)에 따르면 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⁵⁾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문단 5(㉞))가 원가모형만을 인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현행 법인세법 제42조에서 <표 7>과 같이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취득 이후에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⁶⁾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을 평가하여 증액(제1항 2호) 또는 감액(제3항 2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기업이 K-IFRS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 중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문단 39).

또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키며, 나머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40).

4) 이 외에도 감가상각 구성요소가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잔존가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오히려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변경의 수단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문단 31, A19)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K-IFRS는 주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K-IFRS에서 이들 모두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 구성요소에 대한 규정의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잔존가치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이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기업실무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 구성요소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문단 72)에서는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에 그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문제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6)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재평가법이 적용됨으로써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

〈표 7〉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재평가증감액 인식차이

법인세법	K-IFRS 제1016호	기준서 제5호
• 법법 제42조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원가모형 적용 원칙 (예외 : 재평가모형 적용 열거)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액 ③ 장부가액 감액 가능한 경우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 법법 제18조(익금불산입 항목)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제외	• 문단 29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 문단 39 : 재평가증가액 동일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 중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문단 40 : 재평가감소액 동일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문단 5(자) 원가모형만 인정

K-IFRS 제1016호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 일시적차이의 확대

K-IFRS의 재평가모형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재평가증가액)와 감소하는 경우(재평가감소액)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의 존재여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있다.

①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평가증가액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⁷⁾ 재평가증가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고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할 때 또는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할 때 이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이 증가액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되며 그 법인세효과를 이연법

7) 장부금액 100억 원의 토지를 120억 원으로 재평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법인세율 20%).

(차) 토지	20억	(대) 재평가잉여금	16억
		이연법인세부채	4억

8) 이와 동시에 같은 금액에 대해 익금산입(잉여금)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인세부채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도 증가하므로 순자산의 크기는 유형자산 재평가증가액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금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할 때⁹⁾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된다.

②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재평가증가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이때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¹⁰⁾

다만,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이전에 법인세법에서 재평가감소액을 인정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원래 취득원가의 범위 내에서 당기에 익금불산입(Δ 유보)하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당기 이전에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재평가를 실시하는 당기에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된다.

(나)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당기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있다.

① 당기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세무조정은 비상각자산인 경우와 상각자산인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비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감소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할 때 손금산입(Δ 유보)한다. 이 감소액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며 그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도입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금액이 감소하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은 증가하므로 순자산의 크기는 유형자산 재평가감소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한 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

-
- 9)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에서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한 후 감가상각을 하던 중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자산재평가액(A)과 재평가감소액(B)의 합계($C=A+B$)가 최초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장부금액(D) 보다 작으면 그 차이인 ($D-C$)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이후에 감가상각비로 결산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처분된 Δ 유보 중 그 이후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말 현재 Δ 유보 잔액은 (A)에서 (D)를 차감한 금액(E)이 0 이하이면 $\{E=(A-D)\leq 0\}$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E)가 0보다 크면 $\{E=(A-D)>0\}$ Δ 유보 잔액에서 (E)를 차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Δ 유보 잔액-E)만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한다. 왜냐하면, Δ 유보 잔액 중 E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부인되어 손금불산입(유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 10) 재평가증가액 중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부분은 익금불산입(Δ 유보)의 세무조정만 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부분은 익금산입(잉여금)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가감소액을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¹¹⁾ 감가상각 시부인에 반영하고, 상각범위액을 넘어서는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게 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유보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처분할 때 손금산입(Δ 유보)하게 되며, 이때 이연법인세자산도 함께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된다.

② 당기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¹²⁾ 이때 재평가감소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¹³⁾ 다만,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경우 감소되는 재평가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¹⁴⁾ 따라서 당기 이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재평가를 실시하는 당기에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된다.

(2)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문제

K-IFRS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모형을 채택한 기업과 재평가모형을 채택한 기업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 사이에서도 공정가치의 측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왜곡시켜 자본시장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후술하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기업가치에 반영된다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이나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K-IFRS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자산별로 감가상각과 관련된 Δ 유보액을 사후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후에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하는 것만 다를 뿐 감가상각과 관련된 유보액의 사후관리

11) 법인세법에 대한 해석(사이 46012-10463, 2003.3.10)은 자산감액손실(손상차손)을 즉시상각 의제로 보고 있는데 자산재평가손실도 즉시상각 의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장부가액 100억원의 토지를 80억 원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4억 원과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 1억 원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법인세율 20%).

(차) 재평가잉여금	4억	(대) 토 지	20억
이연법인세부채	1억		
자산재평가손실(당기손익)	15억		

13) 재평가감소액 중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 이외에 추가적인 손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부분은 재평가잉여금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14) 주식 9)의 ‘둘째’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는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잡해지게 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사후관리하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조정 목적¹⁵⁾이 아니라면 이러한 복잡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과 변동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영자와 회계담당자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숙련된 실무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생산과 세무신고에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하기 이전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차입원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문단 8)에 따르면 차입원가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는데 관련된 이자 기타 원가를 말한다.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서 제7호와 차이점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기준서는 자본화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K-IFRS는 자본화가 강제되어 있고, 둘째, 자본화 대상자산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은 제조설비자산과 전력생산설비로, 투자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화가 강제됨으로써 현행 기준서에 비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유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재 자본화를 선택하고 있는 기업은 자본화 대상자산이 축소됨으로써 현재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유보)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이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회계담당자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감가성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면 재평가 당해 사업연도에는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만 이후 사업연도에는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크게 나타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후 사업연도에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이익을 조정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표 8〉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비교

구분	법인세법	K-IFRS 제1023호	기준서 제7호
자본화 강제여부	• 법법 제28조 ① 3 자본화 강제	• 문단 8 자본화 강제	• 문단 6 자본화 선택 가능
대상자산	• 법령 제52조 ① 사업용 고정자산 (유·무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	적격자산(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 산)의 취득, 건설, 제조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 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 는 자산)	• 문단 3(3) 유형·무형·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 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 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 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다. 자산손상과 이연법인세

K-IFRS는 제1036호에서 자산손상과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특정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 자산손상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제7항,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해), 57(나), 67~73, 74(해)(4), 76,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해), 35와 36, 43(해)(4), 44, 인수·합병준칙 9.라에서 각각 분산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제42조에서 자산감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산손상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손상징후의 포착, 손상차손의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

(1) 자산손상징후의 제시

<표 9>에 제시되어 있듯이 법인세법, K-IFRS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자산손상의 징후를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2조에서는 감액손실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유형자산에 한정하여 자산손상의 징후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K-IFRS는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손상의 징후를 기업의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¹⁶⁾ 이러한 자산손상 징후의 차이점 때문에 K-IFRS를 채택하게 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 보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상차손을 더 많이 인식함으로써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크기가 확대되어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 자산의 크기와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6)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를 하여야 한다.

17) 자산손상을 인식한 당해 연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한다. 따라서 자손손상을 인식한 사업연도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발생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법인세법 예규판례에 따르면 감가성자산의 경우 기업

〈표 9〉 자산손상징후의 차이

법인세법	K-IFRS 제1036호	기준서 제5호
• 법법 제42조 ③ : 장부가액 감액 가능한 자산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4. 파산한 법인의 당해 주식 등	• 문단 12 : 자산손상 징후 <외부정보> (1) 자산의 시장가치가 중요하게 하락한 경우 (2) 경영상의 환경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시장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내부정보> (5)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이 있는 경우 (6)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문단 35 : 자산손상 징후 -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다)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라)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그런데 현재 실무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상징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될 때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7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IFRS 제1036호 문단 12(4)에서도 자산손상징후로서 순자산 장부금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등으로 순자산 장부금액이 높은 기업이 손상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손상검사를 수행해야만 하므로 기업이 회계정보를 생산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감액손실은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있다(서면2팀-1884, 2004.9.9.). 또한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다(국심2007부797, 2008.01.21). 그러나 비감가성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감가성자산에 대한 예규판례로 미루어 볼 때,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손상차손의 측정방법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문단 36)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K-IFRS 제1036호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 인식단계를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K-IFRS가 적용되면 손상차손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이 높아져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손상차손 손금불산입액이 증가하여 K-IFRS 적용 이전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세법(법률 제42조, 법령 제78조)에서는 특정 자산에 한해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K-IFRS 제1036호의 회수가능액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개념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연법인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금창출단위를 구분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손상차손의 측정방법

법인세법	K-IFRS 제1036호	기준서 제5호
• 법령 제78조 ③ 감액사유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 으로 감액함	• 문단 6 적용대상 모든 자산에 대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 하지 않고 손상차손은 자산 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 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큼 인식함	• 문단 36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로 구분 ① 인식단계 :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함 ② 측정단계 :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 다면 그 측정금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함

이상과 같이 K-IFRS를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자산손상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회계담당자를 교육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손상의 검사와 측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지식과 숙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3)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르면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나머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61). 또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119). 다만,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120).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재평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재평가증감액과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비교

구분	재평가모형 적용여부	회계처리
재평가증가액	적용	①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 존재 : 재평가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평가감소액	적용	①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잔액의 차감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차손	미적용	① 재평가되는 자산 :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 ②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차손누계액에 계상
손상차손환입	미적용	① 재평가되는 자산 : 재평가증가액 발생과 동일하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처리. 다만,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차손환입으로 계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유형·무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K-IFRS에 비해 대상자산의 범위가 좁고 회계처리가 매우 단순하다. K-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고 있으므로 감가상각과 동일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만 손상차손환입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이 재평가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앞서 재평가잉여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3. 충당부채와 이연법인세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그리고 법인세법 각각 상이하다. K-IFRS 제1037호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자원의 유출가능성 수준이 ‘매우 높은(80%)’(현행 기준서 제 17호) 경우에서 ‘높은(50%)’ 경우로 변경·완화하였다.¹⁸⁾

18)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높지 않은(not probable)” 경우 및 “아주 낮은(remote)”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을 경

〈표 12〉 자원의 유출가능성 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의 차이

	0%	50%	80%	100%
유출가능성				
기준서 제17호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인식
K-IFRS 제1037호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80). 앞의 책.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를 하도록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80%)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80). 그러나 K-IFRS는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50%) 경우로 설정함으로써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채의 과소계상 및 이익의 조작가능성을 줄이려고 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부채금액의 증가 및 부채비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충당금) 이외의 충당부채는 인정되지 않는다.¹⁹⁾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되는데 유출가능성 기준의 완화에 따라 K-IFRS도입 이전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IFRS 제1037호(문단 59)에서는 충당부채를 매기말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재측정(충당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부채금액 및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는 충당부채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K-IFRS를 도입하는 첫해에 부채금액과 부채비율 변동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고, 아주 낮은 경우에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 19)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서이 46012-11711, 2002.9.13.). 또한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하는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이 46012-11425, 2003.7.29.).

4. 종업원급여와 이연법인세

현재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다.²⁰⁾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방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 퇴직급여채무의 측정방법 변경

<표 13>에 요약되어 있듯이,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준 제27조, 해석 13-27, 적용의견서 05-2)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②)은 퇴직급여채무에 청산가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의 30%와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5%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²¹⁾ 이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만 퇴직급여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표 13〉 퇴직급여채무의 측정방법

구분	법인세법	K-IFRS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적용 개념	• 청산가치개념	• 예측급여채무개념	• 기준 제27조 및 해석 13-27 : 청산가치 개념 • 적용의견서 05-2 - 퇴직일시금 : 청산가치 개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예측급여채무개념
측정 방법	• 법령 제33조, 법령 제60조 일정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 인정	• 문단 63~91 보험수리적 방법	• 퇴직일시금 :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 퇴직연금 : 보험수리적 방법

20) 기업회계기준 제27조와 해석 13-27은 부채의 측정 면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정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K-IFRS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서 기업회계기준 제27조와 해석 13-27에 근거하여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를 발표하였다.

21) 물론 법령 제44조의2에는 손금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사외적립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금인정을 해 주고 있으므로 사실상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전액 사외 적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부채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퇴직연금미지급금을 측정해야 하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²²⁾

K-IFRS 제1019호(문단 73)에 따르면 퇴직급여채무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측정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²³⁾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구성요소들이 변동하면 퇴직급여채무가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수리적 방법을 적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청산가치개념을 적용하는 현행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

〈표 1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인식여부

법인세법	K-IFRS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법령 제44조의2 ③, 제60조 ① : 인식 배제	문단 67 : 인식함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이 없으므로 인식하지 않음.

<표 14>에서 보듯이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나 K-IFRS 제1019호는 인식하고 있으므로 K-IFRS를 시행하게 되면 퇴직급여채무의 인식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더라도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인식금액 차이로 인해 퇴직급여채무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K-IFRS를 채택하게 되면 1년 미만 근속자까지 포함한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퇴직급여채무의 인식금액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금액과 그 변동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면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규약에 따라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24).

23) 인구통계적 가정으로는 (가)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나)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다)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라)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이 있고, 재무적 가정으로는 (가) 할인율, (나)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다) 의료급여의 경우 미래 의료원가 (라)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있다.

기업들은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구축, 관련 내부전문가의 육성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회계감사인은 퇴직급여채무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사외적립자산과 수익의 측정

퇴직급여채무로서 사외적립자산의 경우 K-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에 따라 회사 지출액만큼 손금으로 인정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측정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외적립자산에서는 측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K-IFRS와 법인세법이 동일한 입장이므로 K-IFRS 도입 이후에 발생하는 사외적립자산 수익은 세무조정이 불필요하지만 도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투자부동산과 이연법인세

가. 투자부동산의 분류와 평가

K-IFRS 제1040호(문단 5)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이러한 투자부동산의 분류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보험업)으로 분류하나, K-IFRS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보험업준칙 제외)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상각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반면, K-IFRS 제1040호(문단 30)에 따르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하여야 하며 보유중인 투자부동산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표 15〉 투자부동산의 분류와 평가

보유 목적	법인세법	K-IFRS 제104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보험업준칙
임대	• 분류규정 없음 • 제42조 ① 보험업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익금으로 봄	• 투자부동산 • 원가(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	• 유형자산 • 원가(상각후원가) * 기준서 제5호	• 투자부동산 • 원가(상각후원가)
시세차익			• 투자부동산 • 취득원가 * 기준 제55조	• 투자부동산 • 취득원가 * 준칙규정 없어 기준 적용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249). 앞의 책 내용 수정.

K-IFRS를 채택하게 되면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전술한 유형자산 재평가와 동일한 이연법인세문제가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70)에 따르면 운용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선급리스료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표 16>에서 보듯이 현행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K-IFRS 제1040호(문단 34)에서는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도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①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수익·시세차익 획득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②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하나라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 보유한 다른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만 허용된다. 즉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표 16> 운용리스자산의 인식 차이

법인세법	K-IFRS 제1040호	기준서 제19호
• 법령 제24조 ⑤ 금융리스만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 통칙 23-24...1 ② 6호 : 선급리스자산의 인식	• 문단 34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허용	• 문단 70 선급리스자산의 인식

따라서 K-IFRS를 적용할 경우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이연법인세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순자산의 증가)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인 익금불산입(Δ 유보)이 필요하고²⁴⁾ 이후 사업연도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평가차손이 발생할 때 손금불산입(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K-IFRS 채택 이전보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

6. 금융상품과 이연법인세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서는 Fair Value Option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보다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확대되고 그 결과 이연법인세자산·

24) 물론 손금산입(기타)의 세무조정도 함께 해야 한다.

부채의 인식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 금융상품의 분류와 평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FRS 제103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와 유사하게 금융자산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지만, Fair Value Option 규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하위항목 중의 하나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을 추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유가증권에 대해 취득원가에 따른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법령 제75조 ①) 예외적으로 주식 등에 대한 시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법령 제78조 ②, ③).

<표 17> 금융상품의 분류와 평가

구분	법인세법	K-IFRS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
금융자산	• 분류 : 명시적 규정 없음 • 법령 제75조 ①, 제78조 ②, ③ -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시가평가 인정	• 문단 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지정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기준서 제8호>문단 7, 8, 9 등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기업회계기준>제13조, 제14조 등 - 매출채권, 대여금 등
금융부채	• 분류 : 명시적 규정 없음 • 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이외에 공정가치 평가 부인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지정부채 - 단기매매금융부채 • 기타 부채(문단 9) • 공정가치로 측정	• 명시적 규정 없음 •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부채는 없음 •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205). 앞의 책 내용 수정.

K-IFRS 제1039호의 Fair Value Option에 의하면, 2 가지 조건 즉, ① 지정을 통하여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²⁵⁾ ②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²⁶⁾ 중 하나를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상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보유한)

25) 예를 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함)

26) 예를 들면, 이자, 배당금 및 공정가치 변동 등 총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형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인 경우

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 지정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나 K-IFRS 제1107호 문단 B5(2)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지정기준’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208).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K-IFRS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용어의 정의에 포함하고, Fair Value Option 규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한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210).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금융부채의 분류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평가의 경우 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외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나. 공정가치 측정의 이연법인세 영향

법인세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보다 법인세법과의 불일치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면 익금불산입(Δ 유보)의 세무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면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금액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 내 비교가능성이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이용하지만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IFRS 도입에 따라 일반 기업들은 공정가치 평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평가보고서를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측정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2008년 10월에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2008, 91). 따라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측정은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연법인세의 측정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의 채택에 따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국가들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활용해야 하며, 회계정보의 생산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감사인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7.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

가. 무형자산의 정의·인식기준과 이연법인세

K-IFRS는 <표 18>에서 보듯이 현재보다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차이

법인세법	K-IFRS 제1038호	기준서 제3호
• 법령 제24조 ① 정의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 23가지를 열거	• 문단 8 (정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u>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u> • 문단 1 식별가능성을 충족하지 않는 <u>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u>을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u>배제</u> • 문단 12 (식별가능성의 개념 명확화) ① 자산의 <u>분리가능성</u> 또는 ② 자산에 대한 <u>계약상 권리</u> 또는 기타 <u>법적 권리</u>의 존재	• 문단 5 (정의) 기업이 <u>보유하고 있으며</u>,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u>식별가능하고</u>, 기업이 <u>통제하고 있으며</u>,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문단 9, 10 분리가능성이 없는 <u>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u>도 식별가능성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형자산의 정의에 포함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88 - 193). 앞의 책 내용 수정.

첫째, K-IFRS 제1038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비해 무형자산을 더욱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 결과 대차대조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하고,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88).

둘째, 사업결합시에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90).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54)에 따르면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업결합시에 대차대조표에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종류가 증가하고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당기 손익(손금)으로 인식할 항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부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 즉, 분리가능한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식별가능성과 통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K-IFRS 제1038호(문단 16)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므로 고객 관련 무형자산(customer-related intangible assets)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았던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보고하는 무형자산의 수가 증가하고,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91).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인식금액 증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무형자산의 정의·인식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8. 사업결합과 이연법인세

가. 영업권의 인식과 상각 중지

현행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준칙)에서는 영업권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할 뿐만 아니라 매결산기에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51, 54)과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문단 80~99)에 따르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여부를 평가하거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그보다 더 자주(연 1회 이상)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손상차손의 중요성여부에 관계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게 되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더욱 많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④)에 따르면 합병·분할시에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만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인정되는 영업권은 세무상 합병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손금산입(△

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영업권이 상각될 때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이에 따라 영업권으로 인식된 금액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되며 그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된다. 그런데 K-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손상차손의 중요성여부에 관계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더 많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면 합병·분할 당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현재보다 더욱 빨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합병·분할 당시에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존재하는 경우²⁷⁾에는 현행 합병준칙에 의할 때보다 장부상 영업권의 인식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이때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법인세법이 부인하고 동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합병·분할 당시에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와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무형자산상각비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구성되고 이 비용의 합계액이 합병·분할 당시에 무형자산을 식별하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나면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영업권의 인식과 상각여부 비교

법인세법	K-IFRS 제1103호, 제1036호	합병준칙
법령 제24조 ④ 합병 또는 분할 시 대가를 지급 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영 업권)으로 인식	- 제1103호 사업결합 51 영업권 : 사업결합원가가 문단 36에 따라 최초에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 54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 - 제1036호 자산손상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상차손으로 당기비용 처리 124 이후 환입불가	- 문단 10. 영업권 가. 영업권 :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²⁸⁾ 나. 정액법에 의한 상각 다. 내용연수 = $\text{Min}(\text{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기간}, 20\text{년})$ 라.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당기비용 처리, 이후 환입불가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2). 앞의 책 내용 수정.

27)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계약관계에 의하지 않는 고객과의 관계'가 새로운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28)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손상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처리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손상평가를 포기하고 상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13). 만약 실무에서 영업권 손상평가를 포기하고 상각을 회피한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영업권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지 않고 장부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업권 손상평가 시스템 구축과 평가에 외부전문가의 참여여부 결정, 자의적 손상차손 인식을 이용한 이익조정여부를 판단할 회계감사인의 전문가적 자질 함양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 부의영업권 개념 삭제

현행 합병준칙은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래에 일정한 방법으로 환입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FRS 1103호는 현실적으로 염가매수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독립적인 제삼자간에 공정가치에 의해 교환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과분의 발생은 측정의 오류를 표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당기손익 반영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정가치를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⁹⁾(한국회계기준원 2007, 14). 재평가 이후에도 남은 초과분은 염가매수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일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무상 합병차익이 존재한다면 부의영업권을 합병 당시에 익금산입(유보)하고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불산입(Δ 유보)하여야 한다. K-IFRS 제1103호를 적용할 경우 합병 당시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가시키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하므로 익금산입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IFRS를 적용함으로써 이전에 인식하였던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부의영업권을 인식함으로써 계상되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이 한꺼번에 감소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³⁰⁾ 그리고 이러

29) 미국재무회계기준 FAS 141의 문단 B187에서는 공정가치 배분이 적절히 되었다면 초과분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고 있다.

30) 기존의 부의영업권으로 계상된 잔액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면 기업의 자본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말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456개 기업 중 개별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은 22개 기업 뿐이었으나 연결재무제표에는 129개의 기업이 부의영업권 잔액을 가지고 있었다. 지분법에 의하여 부의영업권 일시환입이 개별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의영업권 잔액을 이용하여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시킬 경우 18개 기업이 연결자본총액 비율이 10%이상 증가하며, 19개 기업은 5%이상 증가하고, 기타 67개 기업은 1% 미만의 변동이 예상된다(한국회계기준원 2007, p.17). 그러

한 경과조치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20〉 부의영업권 인식 차이 비교

법인세법	K-IFRS 제1103호	합병준칙
• 법법 제12조 ①②, 법령 72 ① 3호 - 합병(분할)차익=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분할)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액 - 합병(분할)대가=합병(분할)교부금 + 합병(분할)교부주식의 액면가액 * 시가범위 내의 장부계상액	• 문단 36, 56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초과분)의 처리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식별 및 측정, 그리고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다시 평가 - 재평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10. 부의 영업권 -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 일시 환입 또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이익처리)

자료원 : 한국회계기준원(2007, 13~14). 앞의 책 내용 수정.

다.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K-IFRS 제1012호(문단 67)에 따라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업결합 이전에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추가적 인식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문단 57)와 달리 추가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때문에 사업결합 당시에 인식한 영업권 또는 사업결합초과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K-IFRS를 적용하면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취득자가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결합시에 영업권 등을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사업결합 기업 사이에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이것은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를 고려하면 연결자본총액의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II. 이연법인세 연구방향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기업가치 관련 정보유용성, 이익조정, 공정가치와 같은 주제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³¹⁾ 본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요약·분석하고,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K-IFRS 도입이 어떠한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제별 선행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되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

가. 선행연구

이연법인세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기업가치, 이익의 질, 감사품질과 같은 정보유용성과의 관련성을 주제로 삼은 연구들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ivoly and Hayn(1992)은 1986년 세법개정에 따른 사건연구에서 세율개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대의 감소와 주식수익률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주식수익률과 이연법인세대는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투자자들은 이연법인세대를 실질적인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대의 반전가능성에 따라 그 가치를 할인하여 회계정보에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Ayers(1998)는 APB No. 11과 SFAS No. 109의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대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연법인세차(대)는 주가와 양(음)의 관계를 보여 SFAS No. 109의 채택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대)를 포함하기 전의 대차대조표에 비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연법인세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가치관련성의 연구로서 Amir et al.(1997)은 SFAS No. 109에 따른 이연법인세 구성요소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이연법인세의 구성요소를 감가상각비, 구조조정비용,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차평가충당금 등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조정비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회귀계수가 다른 구성요소에 비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이연법인세가 단기간 내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차이가 단기간 내에 역전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가치에 공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에 더하여 Sansing(1998)은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코 역전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부채는 실질적인 부채로서의 경제적 성격을 지니며, 그 경제적 가치는 장부금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자본비용을 고려하여 할인한 값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으로서 Guenther and Sansing(2000)은

31) 200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회계학연구, 회계정보연구, 세무학연구, 회계저널, 세무회계저널, 회계와감사연구에 게재된 이연법인세 관련 논문은 모두 25편인데, 기업가치관련 정보유용성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관련 13편, 이익조정 7편, 공시관련 3편, 재무비율 관련 1편, 공정가치 측정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법인세의 가치평가는 이연법인세가 역전되는 시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그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가치는 기록된 금액과 일치하나, 장부금액이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시장가치는 기록된 금액이하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화진·김 혁·백원선(2001)은 투자자들이 이연법인세를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지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Sansing(1998)의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부채비율에 따른 이연법인세변수의 주가배수를 분석함으로써 이연법인세의 평가시에 해당 기업의 자본비용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이연법인세계정의 가치관련성과 자본비용에 따른 현재가치평가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Ohlson(1995) 모형에 기초한 초과이익평가모형에서 도출하였다.

이준규·김문철·김갑순(2001)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변형하여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는 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연법인세의 각 구성요소를 실현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실현시기별 구성요소의 주가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보다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일수록 큰 회귀계수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시에 이연법인세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현시기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태승·권해숙(2001)은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채(대)가 주식의 시장가치와 유의한 양(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종천·오용락(2002)은 단순이익자본화모형과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여 주당순이익, 이연법인세채·대, 주당초과이익 및 주당장부가치와 주가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단순화자본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이 미반영한 주당순이익보다 주가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이다. 둘째, 이연법인세채(대)는 주가와 밀접한 양(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이 결과는 투자자가 이연법인세채를 자산으로서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대를 부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러나 Ohlson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초과이익과 장부가치가 상호 보완하여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Ohlson모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호영·조찬우(2003)는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채(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가치평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고 이연법인세순액도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연법인세순액을 이연법인세채와 이연법인세대로 분리하여 자산성과 부채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연법인세순액의 변동부분과 이연법인세채의 변동부분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연법인세대의 변동부분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용근·권기룡(2003)은 이연법인세 도입직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

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비해 투자자 등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세용·이창우(2003)은 이연법인세를 적용한 회계이익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가치에 대한 회계이익의 회귀계수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타당함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김상조(2004)는 이연법인세계정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인식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연법인세계정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1999년에는 67.6%, 2000년에는 72.3%로 나타났으며, 2개 연도 각각 순이연법인세(대변)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성일·최 관(2004)은 이연법인세차가 그 실현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은 당해 연도 순이익, 다음 연도 순이익, 3개 연도 평균 경상이익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들은 첫째, 이연법인세차·대는 주식시장에서 경제적인 실질이 있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고 있고, 둘째, 여러 가지 측정치로 실현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일관성 있게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이연법인세차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주가와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투자자들이 실현가능성에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백원선·김상현(2005)은 미래법인세효과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실현가능성 판단에 개재된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 즉 감사품질이라는 관점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정확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과 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판단, 즉 감사품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을수록,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감사품질)이 떨어질수록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추가배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현·백원선(2006)은 내부소유집중도가 낮을수록, 부채비율과 재무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고이익수준이 낮을수록 즉, 기업의 재무보고비용이 클수록 이연법인세자산 중 재량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크기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보고이익수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재무보고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이 약한 상황에서 더욱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을 반영하는 감사품질이 미래법인세효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현실적 문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현우·문상혁·김상현(2005)은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에 따라 평가된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과세소득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백원선·조현우(2005)는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법인세효과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발생액의 질이나 이익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이익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상대적 크기,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 주가순자산비율, 배당지속연수 등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측정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현금전환가능성의 측면에서 발생액의 질과 이익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과거 3년간 연평균 재무성과와 1년 후 실제재무성과로 실현가능성을 측정한 경우에는 전자의 변수는 발생액의 질이 후자의 변수는 이익지속성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의 후속연구로서 조현우·백원선(2008)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조기에 인식한 기업일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을 합한 금액 중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 경상이익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연도별 최고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측정하고, 이익의 질은 유동발생액의 질, 이익지속성, 이익예측가능성, 이익유연화, 가치관련성 등 총 5가지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도상호·안홍복(2008)은 현행 기준서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법인세 회계정책을 기회주의적 수단으로 이용할 여지를 남겨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괴리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나. 미래의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기업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주로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Ohlson(1995)모형의 설명력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업가치평가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K-IFRS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기준서를 적용할 때보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기업가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기준서와 K-IFRS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현재가치가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도입되더라도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증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들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기업가치 또는 이익의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탐색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고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품질의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다.

2.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조정 가능성

가. 선행연구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를 포착하는 측정치로서 이연법인세 정보는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적인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Phillips et al. 2003). 미국의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르면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주석으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가산할일시적차이, 즉 이연법인세부채가 큰 기업일수록, 미래 예상과세소득이 큰 기업일수록 평가충당금을 적게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and Skinner 1998).

전규안·박종일(2002)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계산한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재량적 발생과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더욱 높이는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였다. 셋째,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수록 이익증가 정책을 추구하여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대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이 이연법인세차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 및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양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현걸(2003)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기업특성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최대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결손누적 및 자본잠식상태에서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인식에 있어서 일관된 판단기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연법인세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이익유연화 목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이용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최대수준으로 가정한 세전이익률 및 부채비율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한 세전이익률 및 부채비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실현가능성의 판단수준에 따라

이익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규안·박종일(2003)은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의 크기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기업의 이익조정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할수록 누적일시적차이가 증가하여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할 때 주로 이연법인세대를 이용하였다. 둘째, 순이연법인세 변동액(혹은 순이연법인세대 변동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변수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순이연법인세대의 변동액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순이연법인세대 변동액에는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마지막으로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감소 회피기업 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순이연법인세변동액이 기업의 이익조정유인 중 하나로 본 특정 상황에서 이익감소 회피기업들의 이익조정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화진(2003)은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연도인 1999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기업특성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이연법인세차의 크기가 경영자의 회계선택 동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연법인세회계 도입 연도의 경우 표본기업의 경영자들이 법인세최소화나 정치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발생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시도하며 이것이 이연법인세차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행한 이익조정의 결과가 이연법인세로 나타난다는 측면과 이연법인세차가 이익조정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종서·문승엽(2005)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측정치인 이연법인세대, 이연법인세의 순변동, 이연법인세의 비기대변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익수준과 이익규모의 횡단면분포에서 비교적 높은 양의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이익증가조정이, 음의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광범위한 구간에 걸쳐 이익감소조정이 나타났다. 둘째, 이익조정판별능력은 이연법인세대, 순이연법인세변동, 비기대이연법인세변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액에 대한 증분설명력은 순이연법인세변동, 비기대이연법인세변동, 이연법인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익변동의 분석에 있어서는 순이연법인세변동과 비기대이연법인세변동은 넓은 구간의 비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판별능력이 있었으나 이연법인세대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발생액에 대한 증분설명력도 이연법인세변동과 비기대이연법인세변동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박재환·이만우·오문성(2005)은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한 코스닥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과 예상연평균이익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벤처기업의 경영자는 큰 이익변동성을 보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익조정을 위한 강한 동기를 부

여받게 되므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다가 과다한 손실이 발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더 이상 이익조정 의미가 없게 되어서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 이익감소 더미변수와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변동변수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익감소의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을 통한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다한 손실이나 자본잠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최대한 인식하는 벤처기업의 회계실무 관행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원욱·장금주(2007)는 상호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즉,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³²⁾이 이익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세무상결손금이 이연법인세의 자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충당금을 통해 이익조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박희우(2005)는 이연법인세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전후 3년간의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회계연도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회계연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더미변수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연법인세 회계제도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익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경우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익조정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

임태균·정석우(2008)는 이연법인세대 수준이 높거나 순이연법인세대변동과 비기대순이연법인세대변동이 큰 경우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유의하게 작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특성 및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경영자들이 이익조정을 통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근접한 이익을 공표하며, 이연법인세정보가 이러한 이익조정을 탐지하는데 유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연법인세정보의 수준에 따라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수정폭과 이익예측오차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무분석가가 이익조정의 크기에 따라 차기의 이익예측에 당기에 발생한 이익예측오차를 다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나. 미래의 연구방향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연법인세회계제도가 새로운 이익조정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K-IFRS의 채택 이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에 이연법인세 관련 이익조정 연구를 집

32)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은 기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 효과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법인세비용을 통하여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금액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은 기말 현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식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당기 이후에 경영자가 자산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재검토 시점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문단 34)과 K-IFRS 제1012호(문단 37)에서는 이것을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총액법을 규정한 SFAS No.109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한다.

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 수단 또는 이익조정의 탐지변수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크기 및 변동액,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등 이연법인세 관련 변수가 이익조정의 크기 및 방향성 등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기업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이익조정 수단이 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변수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적인 연구결과가 이연법인세 관련 변수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과 실무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K-IFRS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을 증대시키므로 K-IFRS 채택을 전후하여 이익조정의 크기와 방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계열적, 횡단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정가치 평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Jones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되는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공정가치 측정

가. 선행연구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이 역사원가나 다른 측정방법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Herrmann et al., 2006; Easton et al., 1993; Barth and Clinch, 1998; Aboody et al., 1999; Alciatore et al., 2000; 김권중 1997, 백원선 등 2002). K-IFRS가 전면적으로 공정가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유발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들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FASB는 2006년에 이미 SFAS No. 157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정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K-IFRS를 도입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측정오류 문제이다. 측정대상 자산과 부채에 대해 활성화된 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한다면 공정가치는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가능한 시장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에 본질적으로 측정오류가 개입하게 된다. 특히 경영자가 공정가치 측정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치와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둘째, 가치평가전문가의 부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 있는 가치평가 전문가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누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임승연 등(2008)은 이러한 문제들 중 정보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평가관리의 감독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과 정부산하 감독기관에 맡기는 방안 중에서, 회계기준의 표준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공정가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역사적 원가정보에 익숙한 회계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정보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으로써 재평가모형을 도입하는 기업은 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일시에 증대되고 손익계산서에는 거액의 평가손익이 계상될 수 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은 이익변동성의 증가를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이창우 2008, 6).

둘째,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적용한 기업(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업(기간) 사이에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가 새로운 회계지식과 회계정보의 차별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이용자가 정보왜곡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회계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K-IFRS가 현재의 회계기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대중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미래의 연구방향

공정가치 개념의 전면적 도입은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공정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들을 개발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앞서 개발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가치 개념은 회계실무자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계연구자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정가치에 입각하여 산출한 회계정보가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K-IFRS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넷째, 공정가치에 입각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들이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이 K-IFRS 도입을 전후하여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4. 공시 등 기타 연구

가. 선행연구

이만우·신현걸(2000)은 많은 기업들이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주식공시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연법인세채를 인식하면서 미래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연법인세를 적정하게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당기순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채비율 및 유효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현걸(2003)은 이연법인세 주석을 충분하게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차이분석 결과 대체로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고 감사인 변경이 없을수록 충분한 주식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식공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주식공시를 충분하게 이행한 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한 회계연도와 적용하지 않은 회계연도의 재무비율을 분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K-IFRS의 채택으로 특히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재환·정석우·권해숙(2007)은 이연법인세 항목의 공시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및 Big5 감사인은 주식 공시수준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또한 주식공시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비감사서비스를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의 경제적 의존도에 의해 측정된 결과 공시수준과 여전히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비감사서비스를 세무조정서비스와 세무조정의 비감사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세무조정의 비감사서비스만이 공시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비감사서비스의 업무에 따라 공시수준과 차이가 있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업무에 따라 업무제한의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비감사서비스 관련 규정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헌·심태섭·배수진(2007)은 재무보고시점이 세무보고시점보다 빠르고 재무보고업무와 세무보고업무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양자간에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보고시점에서 공시되는 부정확한 일시적차이가 가급적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많게 혹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적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오차는 결과적으로 법인세비용의 하향조정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 재무보고시점의 대응치인 감사보고서일자가 늦을수록 경영성결과가 양호하지 못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시중지방은행일수록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특성을 지닌 기업일수록 재무보고시점에

가급적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많이 혹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적게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회계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감독당국이 감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시적차이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미래의 연구방향

첫째,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IFRS는 현재 보다 이연법인세에 관해 더 많은 주식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사항의 정보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현재와 비교해 볼 때 K-IFRS 도입 이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하며, 그 주된 원인과 예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IV. 결 론

지금까지 K-IFRS의 채택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주요 재무제표 구성요소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연법인세와 기업가치, 이익의 질, 감사품질 등과 같은 정보유용성과의 관련성,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 공시사항 등 이연법인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연법인세회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 (1) K-IFRS는 probable의 개념을 ‘거의 확실’ 또는 ‘매우 높은’에서 ‘높은’으로 재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이 완화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기업의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이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에서 ‘높은’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금액의 증가 및 부채비율의 상승,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K-IFRS 도입하는 첫해에는 재무비율, 자산규모, 기업가치를 측정하여 평가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적용세율이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되었는데 실무적으로 평균세율을 측정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평균세율 측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K-IFRS 제1001호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현행과 달리 대차대조표에 모두 비유동자산·부채로 표시된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따르는 경우에 비해 유동자산·부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유동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K-IFRS를 도입하는 직전 회계연도와 첫 회계연도의 유동비율 변동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자산측정과 평가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시적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 재평가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되므로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다. 반면, 재평가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되므로 순자산의 크기는 유형자산 재평가감소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한 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재평가로 인한 유보액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사후관리가 현행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지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정보생산과 세무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원가모형을 채택한 기업과 재평가모형을 채택한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 사이에서도 공정가치의 측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왜곡시켜 자본시장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기업 가치에 반영된다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선택이나 공정가치의 측정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K-IFRS는 현행 기준서와는 달리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손상의 징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K-IFRS를 채택하게 되면 현재 보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상차손을 더 많이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손상차손검사의 범위 확대로 인한 이연법인세정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손상차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손상차손 검사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실무자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 (5) K-IFRS는 금융상품에 대해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지만 법인세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도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평가손익의 발생으로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인식금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Fair Value Option을 선택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인식금액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6) K-IFRS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수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그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현재보다 더 많이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K-IFRS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검토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 손상차손을

더 많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합병·분할 당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현재보다 더욱 빨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합병·분할 당시에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행 '합병준칙'에 의할 때보다 장부상 영업권의 인식금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합병·분할이후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자산의 손상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정보생산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실무에서 이것을 이유로 영업권 손상검사를 포기하고 상각을 회피한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인 영업권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지 않고 장부상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 (8) K-IFRS는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의영업권 개념을 삭제하였다. 합병당시 세무상 합병차익이 존재한다면 현재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IFRS를 적용함으로써 이전에 인식하였던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부의영업권을 인식함으로써 계상되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이 한꺼번에 감소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9)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에 따른 기업의 재량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와 관련한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K-IFRS를 채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정비, 회계담당자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인인 이연법인세회계에 관한 전문가적 식견을 길러 품질 높은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회계환경이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책무가 있다.

다음으로 이연법인세에 관한 미래의 연구방향에 관한 것이다.

-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기업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데 더욱 적합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과 변동성 증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의 타당성,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치, 이익의 질 등과의 관련성, 공시의 정보효과 등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 수단의 또는 이익조정의 탐지변수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크기 및 변동액,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등 이연법인세 관련 변수가 이익조정의 크기 및 방향성 등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기업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이익조정 수단이 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변수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3) 공정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들의 개발과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연법인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공정

가치 측정방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앞서 개발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가치 개념은 회계실무자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계연구자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4) 공정가치에 입각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들이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새로 적용될 K-IFRS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영향을 회계정보생산자와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 정보에 포함된 이연법인세정보가 K-IFRS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유럽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받을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제안하는 점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회계실무자와 회계감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이 적용된다면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후속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8.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서광인쇄공사.
- 김경호 · 정영기 · 김경태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영향검토와 영향 분석」, 한국회계기준원.
- 김권중. 1997. “자산재평가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회계학연구 제22권 제1호 : 37 - 57.
- 김상조. 2004. “이연법인세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21권 제4호 : 171 - 192.
- 김상현 · 백원선. 2006.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93 - 224.
- 김상현 · 심태섭 · 배수진. 2007.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공시의 적정성과 기업특성”.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도상호 · 안홍복. 2008. “기업지배구조, 이연법인세자산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 분석”. 회계학 연구 제33권 제1호 : 33 - 68.
- 박재환 · 정석우 · 권해숙. 2007. “지정감사인, 감사인유형 및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기업의 주식공시수준 - 이연법인세와 금융비용자본화를 중심으로 -”.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189 - 212.
- 박재환 · 이만우 · 오문성. 2005.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 125 - 146.
- 박태승 · 권해숙. 2001. “이연법인세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1호 : 27 - 52.
- 박희우. 2005. “이연법인세와 경영자 이익조정”. 회계와감사연구 제42권 : 209 - 239.
- 백원선 · 이화진 · 정영기. 2002. “자산재평가 동기와 재평가적립금의 가치평가”. 회계학연구 제27권 제3호 : 1 - 24.
- 백원선 · 조현우. 2005.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과 발생액의 질 및 이익지속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5 - 51.
- 백원선 · 김상현. 2005.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감사품질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99 - 120.
- 신호영 · 조찬우. 2003. “이연법인세 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9권 : 131 - 143.
- 신현걸. 2003.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현황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9권.
- 이만우 · 신현걸. 2000. “이연법인세회계 최초 도입연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51 - 65.
- 이세용 · 이창우. 2003.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 127 - 156.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II - 3 : 189 - 228.
- 이종천 · 오웅락. 2002.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4호 : 31 - 55.

- 이준규 · 김문철 · 김갑순. 2001. “이연법인세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45 - 164.
- 이창우.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 : 공정가치”. 월간조세 10월호 : 4 - 6.
- 이화진. 2003.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차의 선택”. 회계와감사연구 제39권 : 27 - 53.
- 이화진 · 김 혁 · 백원선. 2001. “이연법인세의 가치평가와 기업의 자본비용”.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65 - 194.
- 임승연 · 최선화 · 송인만 · 고승의 · 이창우.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47권 : 59 - 83.
- 임태균 · 정석우. 2008. “이연법인세정보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의 특성”.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181 - 204.
- 전규안 · 박종일. 2003. “순이연법인세변동액과 이익조정에 관한연구”. 한국세무학회 창립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세계개혁 심포지엄 : 새 정부 세계개혁의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집 : 59 - 93.
- 전규안 ·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 107 - 135.
- 전성일 · 최 관. 2004.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과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 65 - 86.
- 정용근 · 권기룡. 2003.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7 - 33.
- 조현우 · 문상혁 · 김상현. 2005. “감사인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 9 - 40.
- 조현우 · 백원선. 2008.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의 질”. 2008년 통합경영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최상문 · 김정교 · 조용언. 2000. 「중급회계」. 무역경영사.
- 최원욱 · 장금주. 2007.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113 - 150.
- 최종서 · 문승엽. 2005.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탐지”. 회계학연구 제30권 특별호 제1호 : 93 - 132.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http : //www.kasb.or.kr](http://www.kasb.or.kr)
- Abody, D., M. E. Barth, and R Kasznik. 1999.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and Future Firm Performance :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6 : 149 - 178.
- Alciatore, M., P. Easton, and N. Spear. 2000. 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f Long - lived Assets : Evidence from the Petroleum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9 : 151 - 172.
- Amir, E., M. Kirschenheiter, and K. L. Willard. 1997. The Valuation of Deferred Tax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4(Winter) : 597 - 622.
- Ayers, B. C., 1998. Deferred Tax Accounting Under SFAS No.109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ts Incremental Value - Relevance Relative to APB No.11. *The Accounting Review* 73(April) : 195 - 212.
- Barth, M. E., and G. Clinch. 1998. Revalued Financia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 Associations with Share

- Prices and Non-market-based Value Estimat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 199 – 233.
- Easton, P. D., P. H. Eddy and T. S. Harris, 1993, An Investigation of Evaluations of Tangible Long-lived Asse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 1 – 38.
- Givoly, D. and C. Hayn. 1992. The Valuation of the Deferred Tax Liability :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7(April) : 394 – 410.
- Guenther, D. A., and R. C. Sansing, R., 2000, Valuation of the Firm in the Presence of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 The Role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Accounting Review* 75(January) : 1 – 12.
- Herrmann, D., S. M. Saudagaran, and W. B. Thomas, 2006, The Quality of Fair Value Measures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ccounting Forum* Vol. 31 : 43 – 59
- Miller, G. S. and D. J. Skinner. 1998.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The Accounting Review* 73 (April) : 213 – 233.
- Ohlson, J. 1995.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Spring) : 661 – 687.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 – 521.
- Sansing, R., 1998, Valuing the Deferred Tax Li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Autumn) : 357 – 363.
- Susana Callao, José I. Jarne, José A. Lainez, 2007 “Adoption of IFRS in Spain : Effect on the comparability and Relevance of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6 : 148 – 178.

The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Deferred Taxes

Yong Eon Cho* · Jeong Ran Lee**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deferred taxes derived from assets, liabilities and capital acc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ores themes of future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vision to highly(50%) in meaning of 'probable' and introduction of fair value in asset valuation may increase the amount and volat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Especially, these effects occur in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property, and financial instruments. As result of thes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compare and interpret financial ratio, asset size, and firm value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Because K-IFRS allows an entity to choose either the cost model or the revaluation model, this may mak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deferred tax not only among entities chosen the revaluation model but also between the chosen and the not chosen, impair the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nfuse investors and creditors to evaluate a firm value.

K-IFRS states to recognize and measure an impairment loss of all of assets. This may increase amount of recognition of deferred tax compared with current standards. On the other hand, burden of information output cost causes an entity to avoid to recognize deferred tax originated from asset impairments.

K-IFRS allows not amortization of goodwill but its impairment, and does not allow recognition of negative goodwill in financial statements. This affects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nd researchers have to pay attention to these findings because previous studies show that deferred tax is related to the firm value and earnings management, measurement by fair value, etc. And they also need to study methods to improve audit quality and to train and educate practical accountant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Key words> Deferred Tax, K-IFRS, Fair Value, Firm Value, Earnings Managemen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Youngsan University